

라이나손해보험은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의 브랜드명으로, 라이나생명과 독립된 계열회사입니다.

무배당 Chubb New 실속안심보험Ⅱ(갱신형)2404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의 종류 : 장기손해보험 / 장기상해

2. 보험종목의 명칭 : 무배당 Chubb New 실속안심보험Ⅱ(갱신형)2404

※단, 판매채널, 플랜에 따라 보험종목의 명칭 중 'Chubb' 부분의 명칭을 생략 및 다르게 할 수 있음.
(보험종목의 명칭 사용 예시: 무배당 New 실속안심보험Ⅱ(갱신형)2404 등)

3. 보험의 목적 : 피보험자의 신체

4.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① 1형(일반형)

구분	최대 보장기간	갱신구분	보험기간	가입연령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 (기본계약)상해사망보장(갱신형) -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갱신형) - 매월주는 암보장 특별약관(갱신형)	80세	최초계약	5년	20세~70세	전기납	월납 연납
		갱신계약	5년	25세~75세		
			1~4년	(80-보험기간)세		
- 중등도이상치매보장(최초 1회한) 특 별약관(갱신형) - 중증치매보장(최초 1회한) 특별약관 (갱신형) - 매월주는 중증치매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85세	최초계약	5년	40세~70세		
		갱신계약	5년	45세~80세		
			1~4년	(85-보험기간)세		
	90세	최초계약	5년	40세~70세		
		갱신계약	5년	45세~85세		
			1~4년	(90-보험기간)세		

주)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거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② 2형(유병자형)

구분	최대 보장기간	갱신구분	보험기간	가입연령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 (기본계약)상해사망보장(갱신형) -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갱신형)	80세	최초계약	5년	20세~70세	전기납	월납 연납
		갱신계약	5년	25세~75세		
			1~4년	(80-보험기간)세		
- 중등도이상치매보장(최초 1회한) 특 별약관(갱신형) - 중증치매보장(최초 1회한) 특별약관 (갱신형) - 매월주는 중증치매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85세	최초계약	5년	40세~70세		
		갱신계약	5년	45세~80세		
			1~4년	(85-보험기간)세		
	90세	최초계약	5년	40세~70세		
		갱신계약	5년	45세~85세		
			1~4년	(90-보험기간)세		

5.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배당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7.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갱신에 대한 사항

가. 대상 : 기본계약 및 전 특별약관

나. 갱신의 운영에 관한 사항

- (1) 기본계약 및 특별약관은 매 5년마다(잔여기간 1년~4년) 최대보장기간 내에서 자동 갱신됨.
- (2) 회사는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피보험자의 갱신계약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통보함
- (3) 갱신대상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보험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해당 계약을 자동으로 갱신함
- (4)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 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을 반영하여 산출함
- (5) 회사는 갱신할 때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음을 갱신할 때 보험료 예시 등을 통해 계약체결을 권유할 때 안내함
- (6)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전 약관을 적용함. 다만, 법령의 제·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을 적용함.

9. 보험료운영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0.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시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 회사가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 범위 내에서 적용함.

11.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함. 다만, 「19. 예약가입 대상 특별약관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예약가입 대상 특별약관’은 해당 특별약관의 보장이 개시하기 전 보험료 선납이 불가함

12. 추가적립보험료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3.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4. 보험계약대출이율에 관한 사항

-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평균공시이율 + 1.5%”로 함.

15.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6. 보험가입금액 한도에 관한 사항

구분	최대가입금액	
	1형(일반형)	2형(유병자형)
상해사망보장	4억원	4억원

17.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사항

- 가.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님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1)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 (2)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3)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
 - (4) 기타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 나. 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변경된 보장내용을 적용함
- 다. 회사는 가.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 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알림.
- 라. 가.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가입금액 및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를 계약 체결시 계약자에게 안내함.
- 마. 회사는 가.에 따라 보장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최신의 통계를 반영하여 보험료산출기초율을 재산출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적용함.
- ： 계약내용 변경일부터 재산출된 보험료산출기초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보험금이 변경될 수 있음
- 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거나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음.

18. 2형(유병자형)의 피보험자 범위

- 가. 유병자형의 피보험자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함
- (1) 고혈압진단자
 - (2) 당뇨병진단자
- 나. “고혈압진단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함
- (1)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측정된 수축기혈압(최대혈압, SBP)의 수치가 140mmHg 이상인 자
 - (2)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측정된 이완기혈압(확장기혈압 또는 최저혈압, DBP)의 수치가 90mmHg 이상인 자
 - (3)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로부터 고혈압으로 진단받아 현재 혈압강화제를 복용하고 있는 자
- 다. “당뇨병진단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함
- (1) 의료기관의 검사결과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측정된 공복혈당의 수치가 126mg/dL 이상인 자
 - (2)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로부터 당뇨병으로 진단받아 현재 혈당강화제를 복용하고 있거나 인슐린주사를 투여받고 있는 자
- 라. 유병자형의 경우 피보험자는 “고혈압진단자” 또는 “당뇨병진단자”라는 이유로 가입이 거절되지는 않으나, 고혈압 또는 당뇨병 이외의 다른 질병이 있는 경우 등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이 보험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음

19. 기타

- 가. 회사는 통신판매(TM, 홈쇼핑 등)시 효율적인 상품설명을 위하여 판매플랜을 설정하여 판매할 수 있음.

나. 플랜의 선택은 계약자의 결정에 의하며, 플랜이 포함하고 있는 선택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제외될 수 있음.

다.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장하는 특별약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 (1) 보험기간은 80세만기 이내로 함
- (2) 질병사망보험금의 한도는 개인당 2억원 이내로 함

라.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에 관한 사항

- (1)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계약(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으로 가입하는 경우, 회사는 지정대리청구서 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에 관련된 내용을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 녹음함으로써 교부 및 설명한 것으로 본다.
- (2)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치매보험계약을 체결(특약 가입을 포함)하는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약관에서 정한 대리 자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지정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자가 미지정을 요청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 (3) (2)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의 지정 편의를 위해 가족관계서류 수령을 생략할 수 있다.
- (4) 회사는 가입시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는 미지정 사유 구분, 모집인 확인, 전산적 재확인, 사후 관리 등 치매로 인한 보험금 청구불능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마. 2형(유병자형)에 관한 사항

- (1)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 유병자형으로 가입한 피보험자가 더 이상 '고혈압진단자' 또는 '당뇨병진단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경우 계약자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고혈압진단자' 또는 '당뇨병진단자' 대상이 아닌 보장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전 계약과 동일한 기준(보험기간,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보장내용 등)으로 계약을 변경하고, 변경된 계약의 보험료를 향후 납입보험료로 적용함
 -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계약의 변경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정산으로 정산차액이 발생하면 그 차액을 정산함.
- (2) 상품판매시 고객안내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은 약관에서 정하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만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상품 판매시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일반 유사상품과의 보험료비교표를 제공함
 - 피보험자가 '고혈압진단자' 또는 '당뇨병진단자'가 아닌 경우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다른 상품에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고혈압진단자' 또는 '당뇨병진단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경우, 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동일한 기준의 보장담보로 계약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동일한 기준의 보장담보란 보험기간,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보장내용 등이 동일한 보장담보를 말합니다.

Chubb. Insured.SM